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6

제출년월일 : 2003. 9. 2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 이율을 인하하고,

나. 연대보증인 조건 완화와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자립지원을 원활히 도모코자 함

다. 조례 조문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므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출 신청자들이 저소득 주민임을 감안,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과 동일한 금리로 조정(현행 : 5% → 개정 : 3%) (안 제5조제2항)

나.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보증인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증인 완화 (현행 : 2인 → 개정 : 1인) (안 제6조제2항)

다. 상환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융자금상환기간을 1년 연장 (현행 : 2년 → 개정 : 3년) (안 제5조제1항 및 제8조)

- (주민소득지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생활안정기금) 2년 거치 24개월 균등분할 상환 →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2년 균분상환"을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연5%"를 "연3%"로 한다.

제6조제2항중 "2인의 연대보증인"을 "1인의 연대보증인"으로 한다.

제8조중 "균분상환"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24개월"을 "36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5%로 하며, 안정자금의 거치 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3년 균등분할상환----------. ②----------연 3%----------.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생략) ②제1항의 대부 신청시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현행과 같음) ②----------1인의 연대보증인----------.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소득자금은 년1회 균분상환하고, 안정자금은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균등분할상환----------36개월---------.